표26-1 |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약관에서 정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분류항목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분류코드
1.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P11.5
2.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P13.0
3.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4.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5.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6.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P13.4
7.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8
8.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P13.9
9.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치아파절 제외)	S02(S02.5는 제외)
10. 목의 골절	S12
11.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1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13.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14. 아래팔의 골절	S52
15.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6. 대퇴골의 골절	S72
17.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8.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9.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20.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21.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2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23.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 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 분류표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환수술로 분류되는 항목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4호, 2019.9.1. 시행)」에서 정한 <mark>분류번호 및 코드</mark> 중 아래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분	수 가 코 드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	N1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	N1715
	N172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N1725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복잡	N2070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	N2071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	N2076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	N0711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	N0715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복잡	N2710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	N2711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복잡	N2716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복잡	N3710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견관절]	N3711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	N3716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복잡-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N3720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견관절]-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N3721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견관절]-복잡-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N3726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복잡	N4710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견관절]	N471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견관절]-복잡	N4716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복잡-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N4720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견관절]-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N4721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견관절]-복잡-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N4726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슬관절]	N3712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	N4712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슬관절]-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N3722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N4722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N2077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N2072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	N2712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복잡	N2717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	N3717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슬관절]-복잡-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N3727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복잡	N4717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복잡-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N4727

주)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상기 분류항목 이외에 "급여 인공관절(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치 환수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표39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표



약관에서 정한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J99.0* : 류마티스 폐질환(M05.1+)]	J99.0*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M06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상포진 분류표



약관에서 정한 "대상포진"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코드
대상포진	B02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대상포진"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통풍 분류표



약관에서 정한 "통풍"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대상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분류코드
통풍	M10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정한 "통풍"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받은 시점 에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 여부의 판단은 질병의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분류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분류코드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22121522000000171521 [별첨2] 표 44. 통풍 분류표 3039

표57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중환자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따른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중환자실"의 시설규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 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 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 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심장충격기를 갖추어야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 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 1.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별표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표59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 아래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19년 8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투약 처방 시 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 (국문·영문)	의약품명 (국문)
1	애플리버셉트 aflibercept	잘트랩주25mg/mL(애플리버셉트)
2	알렉티닙염산염 alectinib	알레센자캡슐150밀리그램(알렉티닙염산염)
3	아파티닙이말레산염 afatinib	지오트립정2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지오트립정3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지오트립정4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4	엑시티닙 axitinib	인라이타정1밀리그램(엑시티닙)
		인라이타정5밀리그램(엑시티닙)
5	보르테조밉삼합체 bortezomib	벨조밉주1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벨조밉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삼합체)
		벨킨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벨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보테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테조민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테조민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
		테조벨주(보르테조밉삼합체)